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449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####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(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) 신고를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, 소재, 전화번호, 등록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,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택 임대차 계약(변경·해제 포함)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정보 추가(안 제6조의2,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)
- 주택 임대차 계약(변경·해제 포함) 신고내역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정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등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

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
- 전화 : 044-201-4177, 4179 / 팩스 : 044-201-5529